



대구의 뿌리 달성 꽃피다

Welfare
Culture
& Economy

-201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대구광역시 달성군
www.dalseong.daegu.kr

목 차

I . 자체성과분석 총괄.....	1
II . 개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7
1.보훈회관건립기금.....	7
2.자활기금.....	13
3.노인복지기금.....	18
4.장애인복지기금.....	25
5.환경보전기금.....	32
6.식품진흥기금.....	38
7.재난관리기금.....	45
8.체육진흥기금.....	51
9.농업인조직육성기금.....	58

총괄 기금 성과분석보고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2016년도 지방기금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 (2015회계연도)

1 총 평

1. 총 평

- 대구광역시 달성군 2016년도 보훈회관건립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인조직육성기금 등 총 9개 기금의 성과분석 결과,
- **보훈회관건립기금은**
 - 달성군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의 문화 및 복지 공간 건립이라는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해 조성하였으며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군비로 매년 5억원을 적립하여 2013년까지 군비목표액 20억원을 조성하였고 2014년도에는 국고보조금 5억원을 지원받아 이자수입금을 포함하여 2015년까지 총 27억원을 조성하였음
 - 보훈회관은 2015년 12월 준공되어 사업 목적을 달성하여 해당 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남은 집행 자금은 일반회계 사업비로 편성하여 목적 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있음
- **자활기금은**
 - 달성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자의 창업 및 자활공동체의 사업 자금 대여, 지역 자활 지원 사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주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며

- 현재 기금 목표액을 기 달성하여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과 지역 자활센터 수입금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기금 일몰제(존속기한)를 도입하고 있으며 2012년~2014년은 자활사업단 전세 점포 임대지원 사업 신청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 실적이 없었으나 2015년에는 2개소, 총 80백만원의 점포 임대비로 지원되어 추진 목적대로 집행되었음
- 향후 용자사업 이외에 사업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노인복지기금은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기반 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기금운용을 통한 이자 수입금이 주된 재원임
- 원금 전액을 예치하여 당해 연도 이자 수익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자율에 따라 사업의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매년 사업 규모의 변동이 발생하여 다소 불안정한 운영 및 재정적 한계가 있음
- 해당 기금 운용부서에는 주된 지출 사업인 경로당 신문구독료 지원, 노인복지관 청춘대학 운영비 지원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 2016년도말 해당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남은 자금은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하여 당초 목적사업에 우선 사용할 계획임

○ 장애인복지기금은

- 장애인 단체 육성지원,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기금운용에 의한 이자 수입금이 주된 재원임
- 원금 전액을 예치하여 당해 연도 이자 수익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자율에 따라 사업의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매년 사업 규모의 변동이 발생하여 다소 불안정한 운영 및 재정적 한계가 있음
- 해당 기금 운용부서에서는 주된 지출 사업인 장애인 단체 지원 사업은 일반

회계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 2016년도말 해당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남은 자금은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하여 당초 목적사업에 우선 사용할 계획임

○ 환경보전기금은

- 자연보호 및 환경 개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기금 운용에 의한 이자 수입금이 주된 재원임
- 해당 기금 운용부서에서는 주된 지출사업인 환경 오염예방 활동지원은 일반 회계 예산 사업으로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15년도말 해당 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남은 집행 자금은 일반회계 사업비로 편성하여 목적 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있음

○ 식품진흥기금은

-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법정기금으로 고유 목적에 따라 각종 과징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운용되고 있음
-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비슬산 자연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음식의 육성 및 발굴을 위해 당초 계획한 기금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음
- 향후 지역 음식문화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재정비 및 발굴하여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재난관리기금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한 법정기금으로 재난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안정적 확보와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 추진이라는 기금 목적을 위해 수행하고 있으며
- 2015년 주된 지출사업은 메르스 예방 물품 구입(1.4백만원), 재해 예방 및 긴급 복구비(762백만원) 등으로 집행되었음
- 최근 지진 등 재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평소 재난 예방, 대비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복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금 운용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

○ 체육진흥기금은

-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건강 수준 향상 및 지역 체육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기금 운용에 의한 이자 수입금이 주된 재원이며 2015년 12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기부된 개인 기부금(1억원)을 기금 수입으로 편성함
- 2015년도 주된 지출사업은 군 체육회 보조사업으로 총 10백만원을 지출하여 조성금에 비해 집행 실적이 미미한 수준임
- 향후 엘리트 체육 육성, 지역 체육 진흥 등 장기적인 사업 수행과 내실있는 체육회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체육사업 투자를 진행할 계획임

○ 농업인조직육성기금은

- 농업인 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새로운 영농 기술 확대보급 및 복지 농촌건설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며 현재 기금운용에 의한 공공예금 이자 수입금이 주된 재원임
- 원금 전액을 예치하여 당해 연도 이자 수익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자율에 따라 사업의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매년 사업 규모의 변동이 발생하여 다소 불안정한 운영 및 재정적 한계가 있음
- 해당 기금 운영부서에서는 주된 지출사업인 4H 교육행사, 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등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 2016년도말 해당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남은 자금은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하여 당초 목적사업에 우선 사용할 계획임

○ 성과분석 대상인 9개 기금 중

- 5개의 기금이 폐지완료(보훈회관건립기금, 환경보전기금) 및 폐지 예정(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농업인복지기금)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법정기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우리군 자체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향후 기금 운용에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개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2016년도 보훈회관건립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9.12.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건립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10 ~ 2013 매년 500백만원을 조성하여 건립기금 2,000백만원 조성
- 2014. 5. 23. 건립기금(국비) 500백만원 조성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174	48	1,851	△1,803	371	-	-	-	기금폐지

II. 분석결과

1. 총 평

- 2010년 최초 500백만원 조성 후 매년 500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자수입 183백만원을 포함하여 2015년 12월까지 총 2,683백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음.
- 상기 기금 조성총액은 2014년 5월 국비 500백만원을 포함한 금액임.
- 2015년 12월 말 보훈회관 건립이 준공됨에 따라 해당 기금은 2015년 12월 31 일자로 조례와 함께 폐지됨.
- 조성금액 2,683백만원 중 지출된 2,312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71백만원은 군 금고에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처리된 상태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00	461	30.7	2,174	1,851	85.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의 문화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을 사업목표로 하였으며, 해당 목표에 충실히 부합되는 효과를 보임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보훈회관 건립기금 조성 사업(국비500백만원) ○보훈회관 건립 공사 착수	○보훈회관 건립기금 조성 (국비500백만원) ○보훈회관 건립 공사 착수	100%
'15년	○보훈회관 건립 완료	○보훈회관 건립 완료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보훈가족들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기금 조성	2010년~2013년까지 매년 군비 500백만원 적립 2014년 국비500만원 지원 2014. 6. 설계용역 2014. 12. 착공 2015. 12. 준공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2015년 12월 공사 준공으로 해당 기금은 폐지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해 당 없 음	
	'14	해 당 없 음	
	'15	해 당 없 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00사업		해 당 없 음)	상 중 하
② 00사업			
③ 00사업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 당 없 음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없 음	-	
타 기금	해 당 없 음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조달방법

: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 및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사업으로
2010년 ~ 2013년까지 매년 군비 500백만원, 2014년 국비 500백만원을 적립하여 총 2,500백만원 조성 완료(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최종 2,683백만원 조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2,102	100 %	2,660	100 %	2,222	100 %
	전입금	500	23.8				
	보조금			500	18.8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554	73.9	2,102	79.0	2,198 (2,174이월)	98.9
	예수금						
	이자수입	48	2.3	58	2.2	24	1.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102	100 %	2,660	100 %	2,222	100 %
	비용자성사업비			462	17.4	1,851	83.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102	100.0	2,198 (2,174이월)	82.6	371	16.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보훈회관 완공에 따른 해당 기금조례 폐지(2015.12.30.)
- 기금 폐지에 따른 자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 처리하여 폐지기금의 목적 사업에 우선 사용할 계획임

2016년도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연도 : 2002년
 - 조례제정일 : 2001. 12. 28.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63	131	80	51	814	95	100	△ 5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1. 더 드슈 분식사업단 전세임대 지원
 - 지원금액 : 보증금 30,000천원
 - 지원기간 : 2015. 6. 1.~2017. 5. 31.
 - 지원일자 : 2015. 5. 19.
 2. 호두나무아래서 사업단 전세임대 지원
 - 지원금액 : 보증금 50,000천원
 - 지원기간 : 2015. 7.26.~2017. 7.25.
 - 지원일자 : 2015.10.28. ※ 시 복지기금 반납 후 달성군 자활기금 지원 신청
- 2015년 자활기금 민간융자금 100백만원 중 80백만원 지출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	0	0	100	80	8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지원	-	0%
'15년	○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지원	○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지원 (80백만원)	8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사업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육성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지원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 지원(80백만원) /80.0%	-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 당 없 음	사업실적 없음
	'14년	해 당 없 음	사업실적 없음
	'15년	해 당 없 음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 당 없 음	-
기 타		없음	-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지원	100백만원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의 탄력적인 수행을 위해 기금 필요	상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작성내용 >

○ 기금 재원

1. 예치금 : 642,232,819원

1-1. 예치금 이자수입 : 16,969,522원

2. 정기예금 이자수입 : 90,116원

3.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 350,000원

4. 그 외 수입 : 113,855,228원

- 자활 사업단 종료로 인한 사업비 반납 : 113,013,869원

- 지역자활센터 1년 미만 자 과년도 퇴직연금적립금 : 768,936원

- 2014년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사용 잔액 : 72,423원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735	100 %	763	100 %	894	10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58	89.5	735	96.3	763	85.3
	예수금						
	이자수입	20	2.7	17	2.2	17	1.9
	기타수입	57		11	1.5	114	12.8
지 출	합 계	735	100 %	763	100 %	894	100 %
	비용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80	8.9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735	100.0	763	100.0	814	91.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 지원을 위해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별로 특색에 맞게 사업단에 지원할 예정임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1999.8.10 제정)
- 설치목적 : 달성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
- 설치일자 : 1999. 8.10.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52	14	14	0	552	8	8	0	

II. 분석결과

1. 총 평

- 1999. 8. 10 설치를 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 말 노인복지기금 551,616천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주된 재원은 기금 운용에 의한 예치금 이자 수익금으로 운용됨
- 2015.12월말 현재 조성규모는 552백만원으로 공금예금에 전액 예치하여 운용 중이나 최근 예치금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기금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기금 운용에 한계가 있음.
- 기금의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에 백세시대 신문 구독료 지원 및 노인복지관 청춘대학 운영을 지원 중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6.8	16.6	98	14.7	14.7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과 관련된 정성적인 요소도 평가하여 기술. 또한 자체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외부평가 결과도 포함시켜 기술)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경로당신문구독료 지원 (9,835천원, 281개소) ○ 노인복지관 청춘대학 운영지원 (7백만원, 1개소)	○ 경로당신문구독료 지원 (9,695천원, 277개소) ○ 노인복지관 청춘대학 운영지원 (7백만원, 1개소)	98%
'15년	○ 경로당신문구독료 지원 (9,730천원, 278개소) ○ 노인복지관 청춘대학 운영지원 (5백만원, 1개소)	○ 경로당신문구독료 지원 (9,730천원, 278개소) ○ 노인복지관 청춘대학 운영지원 (5백만원, 1개소)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은 목적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취미활동 및 여가시설의 운영에 기여하고 있음
- 관내 경로당에 '백세시대' 신문 구독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함
- 노인복지관 청춘대학 운영비 지원을 통해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도모할 수 있도록 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과 노인 단체 의 건전한 육성	- 경로당 '노년시대' 신문 구독료 지원 - 노인복지관 청춘대학 운영지원	- 적정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적정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 당 없 음	
	'14년	해 당 없 음	
	'15년	해 당 없 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업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00사업		해 당 없 음	상 중 하
② 00사업			
③ 00사업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기금폐지 예정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노인복지기금의 2015.12월말 현재 조성 규모는 551백만원으로 공금예금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금리변동에 따라 기금 운용 규모가 정해지는 한계가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570	100 %	568	100 %	566	10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54	97.2	554	97.5	552	97.5
	예수금						
	이자수입	16	2.8	14	2.5	14	2.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570	100 %	568	100 %	566	100 %
	비용자성사업비	16	2.8	16	2.8	14	2.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54	97.2	552	97.2	552	97.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노인복지기금은 원금 전액을 예치하여 당해 연도 이자 수익금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자율에 따라 사업의 규모가 결정 됨.
- 따라서 매년 사업 규모의 변동이 발생하여 다소 불안정한 운영 및 재정적 한계가 있음.
- 지속적인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인한 실질적 기금 운용의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 등에 비추어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여 일반회계로 통합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201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2003년 설치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65	12	16	△4	561	8	11	△3	

II. 분석결과

1. 총 평

- 장애인단체의 육성지원,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2003.7.1부터 기금목표액(5억원) 조성을 위해 매년 군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인해 2015년말 561백만원 조성됨.
- 장애인들의 자립의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이동보조기구(휠체어, 스쿠터) 급속 충전기 설치 등 새로운 지원사업을 하여 복지 증진에 힘씀.
- 장애인복지를 위한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하고, 낮은 이자수입으로 지속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본법 등에 근거하여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7	15	88.2%	17	17	98.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15백만원, 5개소) ○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2백만원, 4명)	○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15백만원, 5개소) ○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0백만원, 0명)	88.2%
'15년	○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15백만원, 5개소) ○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2백만원, 4명)	○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15백만원, 5개소) ○ 장애인자립 지원 (2백만원, 1개)	98.2%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및 문화체험 등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자립과 이동편의에 중요한 전동보조기구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14조, 달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지원	-장애인단체의 육성지원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 -장애인 지경사회활동 참여지원 -장애인 긴급의료비 및 긴급구호 등 생활안정지원	98.2%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 당 없 음	
	'14년	해 당 없 음	
	'15년	해 당 없 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00사업		해 당 없 음	상 중 하
② 00사업			
③ 00사업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장애인복지단체 운영지원	88,910천원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기금폐지 예정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장애인복지기금을 군 금고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있어 낮은 금리에 따라 기금운용의 규모가 축소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582	100%	580	100%	577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66		566		565	
	예수금						
	이자수입	16		14		1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582	100%	580	100%	577	100%
	비용자성사업비	16		15		1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66		565		56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장애인단체 지원 등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운용 가능하며, 지속적인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 운용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 등에 비취볼 때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여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2016년도 환경보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8. 10. 1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76	12	-	0	488	-	-	-	기금폐지

II. 분석결과

1. 총 평

- 환경보전기금 운용조례폐지 및 일반회계 예산사업 전환

2. 사업운영의 성과

-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3	6	46	12	0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자연보호장비 구입(340천원) ○ 운영위원 수당(360천원) ○ 멀티탭 구입(5,800천원) ○ 입간판 설치(6,840천원)	○ 자연보호장비 구입(328천원) ○ 멀티탭 구입(5,700천원)	46%
'15년	○ 자연보호장비 구입(357천원) ○ 운영위원 수당(360천원) ○ EM,EM흡공 구입(4,400천원) ○ 입간판 설치(6,840천원)	-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환경보전 개선사업의 조기 달성을 위한 자금의 안정 적 확보 및 기금적립이차 의 환경개선사업 투자로 환경개선효과 거양	-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15년 12월 해당 기금 폐지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 당 없 음	
	'14년	해 당 없 음	
	'15년	해 당 없 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00사업		해 당 없 음)	상 중 하
② 00사업			
③ 00사업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 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기금폐지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최초 군 출연금으로 조성 이후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기금 조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484	100%	482	100%	488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68	96.7	469	97.3	476	97.5
	예수금						
	이자수입	16	3.3	13	2.7	12	2.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84	100%	482	100%	488	100%
	비용자성사업비	15	3.1	6	1.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	
	예탁금						
	예치금	469	96.9	476	98.8	488	10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해당 기금조례 폐지(2015.12.30.)
- 기금 폐지에 따른 자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 처리하여 폐지기금의 목적 사업에 우선 사용할 계획임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 설치연도 : 2001. 12. 28

※ 조례제정 : 2001. 12. 28 제1786호, 일부개정 : 2015. 7. 30 제2339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93	97	88	9	202	155	140	15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제4회 달성(향토·전통) 음식경연대회
 - 70개 팀 210작품 출품, 대상 포함 17명 시상
 - 「제17회 달성군민체육대회」와 연계행사로 지역 음식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알리고, 대회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향토음식 발굴·보급
-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 모범음식점(83개소) 상수도 요금 및 위생용품 구입비 등 지원
- 나트륨 줄이기 지원
 -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 염도계, 알림판 등 위생용품 배부

○ **잘된점, 미흡한점, 향후조치계획**

- **잘된점** : 지역 음식산업 육성사업에 맞는 사업을 기금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으며, 위생적으로 관리가 우수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으로 관내 음식문화개선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달성(향토·전통) 음식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지역음식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알리고, 향토음식 발굴과 보급하는데 기여함.
- **미흡한점** : 기금규모의 제약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 **향후 조치계획** : 기금설치 목적에 맞고 지역음식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달성음식경연대회 등 우수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서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거 2001년 설치하여 고유목적에 따라 각종 과징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음식문화개선 사업, 모범음식점 지원, 나트륨줄이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식품진흥기금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0	47.8	95	90	88.4	9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및 나트륨 줄이기 지원 등 지역 건강한 음식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으며, 특히 달성향토·전통음식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농특산물과 향토 음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메뉴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지역음식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지역 음식이미지 제고와 식품위생 향상에 기여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포상금 지급(500천원) ○ 음식문화개선사업사업(3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슬산자연음식경연대회 보조 - 나트륨줄이기사업 홍보물지원 ○ 모범업소지원(9,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음식점 상하수도료 및 위생용품 등 지원 ○ 기타(2,1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위생정책 자문회의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포상금 지급(500천원) ○ 음식문화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슬산자연음식경연대회 보조금 교부(30백만원) - 나트륨줄이기 참여업소 위생용품 및 좋은식단 홍보용품 배부(3,300천원) - 염도계 제작 및 구입(4,694천원) ○ 모범업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음식점 상하수도료 및 위생용품 등 지원(9,100천원)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정책 자문회의 수당(300천원) 	95%
'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업소지원(9,6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음식점 상하수도료 및 위생용품 등 지원 ○ 음식문화개선사업사업(39,3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회 달성음식경연대회 지원(30,000천원) - 나트륨줄이기 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9,300천원) ○ 신고 포상금 지급(500천원) ○ 기타(40,54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등의 시불입금 -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업소지원(9,596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음식점 상하수도료 지원(8,300천원) -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1,296천원) ○ 음식문화개선사업사업(39,152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회 달성음식경연대회 지원(29,852천원) - 나트륨줄이기 사업 관련 홍보물(염도계 등) 제작(9,300천원) ○ 신고 포상금 지급(330천원) ○ 기타(39,328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등의 시불입금(24,648천원) - 과징금 환급(14,500천원) -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180천원) 	98%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충당	-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 사업 - 식품위생법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식품위생관련 사업추진으로 설치목적에 부합함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사업 전개로 기금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13년	해당 없음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개최 - 지난 2013년에 단 한차례도 식품진흥기금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한 사실에 대하여 지적	2014 대구시 종합감사
	'15년	해당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목적 변경 논의 불필요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음식문화개선사업	49,300천원	일반예산에 편성 수행시 예산 성립 불투명	상
② 모범음식점지원	9,600천원	일반예산에 편성 수행시 예산 성립 불투명	상
③ 신고포상금 지급	500천원	일반예산에 편성 수행시 예산 성립 불투명	상
합 계	59,4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 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달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에 맞는 기금의 운용으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수입금(이자수입), 시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261	100%	256	100%	299	100%
	전입금						
	보조금	23	8.8	28	10.9	29	9.7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98	37.5	163	63.7	183	61.2
	예수금						
	이자수입	3	1.2	3	1.2	4	1.3
	기타수입	137	52.5	62	24.2	83	27.8
지 출	합 계	261	100%	256	100%	299	100%
	비용자성사업비	39	14.9	48	18.7	49	16.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63	62.5	183	71.5	203	67.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59	22.6	25	9.8	47	15.7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수입 대비 적정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나트륨줄이기 사업, 음식경연대회 지원 등 지역에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리에 힘쓰고자 함.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설치목적 : 재난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안정적 확보와 재해 및 재난 예방 사업 활용을 위하여 적립
- 설치일자 : 2005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266	1,019	135	884	5,150	970	880	90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메르스 예방용품 구입 : 1.4백만원
- 제설장비 구입 : 133.6백만원

○ 전국적인 메르스 확산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겨울철 사전대비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기금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음

○ 아울러, 자연재난예방·대비·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각종 재난발생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 실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준치가 요구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683	762	45.3	834	135	16.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재해예방홍보(10백만원) ○ 재료비 구입(240백만원) ○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비 (1,433백만원)	○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비 (762백만원)	45.3%
'15년	○ 재해예방홍보(9.3백만원) ○ 메르스예방용품구입 (1.4백만원) ○ 재료비 구입(240백만원) ○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비 (450백만원) ○ 자산취득비(133.6백만원)	○ 메르스예방용품구입 (1.4백만원) ○ 자산취득비(133.6백만원)	16.2%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 제67조 및 대 구광역시 달성군 재 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재난대책에 소요 되는 비용의 안정 적 확보와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 · 활용을 위하여 적 립	재난예방사업 및 긴급복구 사업으로 활용 (조례 제6조에 명시) -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적립액 매년 100% 적립 달성 • 재난발생에 따른 조치필요 시 위원회를 통해 결정, 신속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05년 재난관리기금 설치 이후 재난에 대비한 기금마련에 주력하여 매년 법정기준적립액을 무리 없이 달성하였으며 또한 재난예방을 위하여 장비 및 재료비 구입비로 매년 평균 50백만원 정도 집행함
- 2015년 메르스 예방용품 구입으로 1.4백만원 집행, 제설장비구입으로 133.6백만원을 집행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 당 없 음	
	'14년	○ 기금의 용도의 사용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에 사용됨에 따라 일반회계에 편성 가능한 사업은 기금사용 지양	대구시 종합 감사
	'15년	해 당 없 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 당 없 음	
기 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법정적 립액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적정하게 사용되 어 질 수 있도록 기금총괄부서와 협의·운용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립은 할 수 있으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복구에 어려움이 예상됨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업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분	사업명	금액	비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
 - 법정적립액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2015년도 최저적립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지방세 보통세				3년간평균 액B(A/3)	법정적립액 C(B*1/100)	확보액
계(A)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52,572	76,703	85,954	89,915	84,190	842	842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4,878	100 %	5,028	100 %	5,285	100 %
	전입금	686	14.1	771	15.3	842	16.0
	보조금	290	5.9			66	1.2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772	77.3	4,139	82.3	4,266	80.7
	예수금						
	이자수입	130	2.7	118	2.4	111	2.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878	100 %	5,028	100 %	5,285	100 %
	비용자성사업비	728	15.0	762	15.1	135	2.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139 (803이월)	84.8	4,266	84.9	5,150	97.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1	0.2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최근 메르스 확산 및 지진 발생 등 재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 재난 예방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복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재난관리기금의 계획 변경 시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적정성을 위하여 사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금의 성격 상 긴급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갑작스러운 재난 발생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위원회 사후 심의 및 서면심의를 가능하도록 개선 건의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 1999. 11. 20.
 - 설치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9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주민들의 체력증진 및 지역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 추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51	116	3	113	764	11	10	1	

II. 분석결과

1. 총 평

- 최근 국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가, 건강과 여가 선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체육 활성화와 엘리트 체육 육성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유연성 있는 집행이 가능한 체육진흥기금을 존치시켜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건강문화 발전 및 체육의 저변확대에 이바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추진실적 :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입상 학생 격려금 지원
- 추진계획 :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지원에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체육발전에 기여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	9.3	93	10	3	3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확보하기 힘든 신축성과 유동성을 기금이라는 형태로 보조하여 군 체육회 사업활동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고, 체육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체육진흥기금의 지속성이 확보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군체육회 보조사업 (10백만원)	○ 군체육회보조사업 (9.3백만원)	93
'15년	○ 군체육회 보조사업 (10백만원)	○ 군체육회보조사업 (3백만원)	3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우수선수 육성 및 지역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유연성 있게 집행 가능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내지 제20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조례 제10조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지역체육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추진	* 지역체육진흥 * 우수선수육성사업 *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참가 * 기타 지역체육진흥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달성군체육회 활동 및 지역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 추진을 통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 당 없 음
	'14년	해 당 없 음
	'15년	해 당 없 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지역체육진흥사업	10백만원	신축적 집행	<u>상</u> 중 하
합 계	1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 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은 군 보조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 유소년 축구 등 지역을 대표하는 체육종목 중점 육성 및 청소년 체육특기자 발굴 육성 및 지원 등 지역체육진흥사업에 매년 10백만원 정도를 지원하여 당초 기금사용계획에 따라 활용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646	100%	660	100%	767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32	97.8	643	97.4	651	84.9
	예수금						
	이자수입	14	2.2	17	2.6	16	2.1
	기타수입					100	13.0
지 출	합 계	646	100%	660	100%	767	100%
	비용자성사업비	3	0.5	9	1.4	3	0.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643	99.5	651	98.6	764	99.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체육진흥기금은 사업 금액 편성과 지출이 일반회계보다 탄력적이고 장기적인 조성 및 운영이 가능하므로 존치할 필요가 있음. 2012년에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므로 앞으로 엘리트 체육 육성, 지역 체육 진흥 등의 장기적인 사업수행과 체육회 사무의 내실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육사업 투자를 진행할 계획임

2016년도 농업인조직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농업인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새로운 영농기술 확대보급 및 복지농촌건설에 기여코자 함
- 설치연도 : 1999년 (조례제정일 1999년 10월 9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14	22	25	△3	1,011	21	21	0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4-H 의식 고취를 위한 4-H회 교육행사 지원 (회원수 : 256명)
- 학교 4-H회 육성을 위한 과제활동 지원
- 농촌지도자 연찬 및 과제 교육 (회원수 : 460명)
- 생활개선회 한마음 교육 (회원수 : 721명)
- 농업경영인회 육성 지원 (회원수 : 568명)

○ 잘된 점

- 농업인단체 교육 및 지원사업 추진으로 회원 자질 향상 및 조직 활성화, 농업인 사기진작에 이바지 하고 있음

- 미흡한 점
 - 금리 하락으로 이자 수익금이 줄어 사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
-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 농업인 교육 및 행사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 농업인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새로운 영농기술 확대보급 및 복지농촌건설을 위하여 필요함
 - FTA 협상체결 등 어려움에 처한 농업현실을 볼 때 농업인 조직육성 기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므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농업 발전에 바람직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 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6.7	22.9	85.8	26.9	25.3	94.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H교육행사(3백만, 300명) ○ 4H지도자 연찬(2백만, 2회) ○ 4H 장학금 지급(1백만, 10명) ○ 영농4H과제활동지원(1.5백만, 1명) ○ 농업경영인육성지원(5.3백만) ○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리더십교육 (5.5백만, 600명) ○ 읍면 농촌지도자회육성 (4.9백만, 9읍면) ○ 농촌지도자회총회(2백만) ○ 농촌지도자회 중앙단위행사 참석 (1회 0.2백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H교육행사(3백만, 359명) ○ 4H지도자 연찬(0.6백만, 2회명) ○ 4H 장학금 지급(1백만, 10명) ○ 영농4H 과제활동지원(1.5백만, 1명) ○ 농업경영인육성지원(5.3백만) ○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리더십교육 (5.5백만, 526명) ○ 읍면 농촌지도자회육성 (3.9백만, 7읍면) ○ 농촌지도자회총회(2백만) ○ 농촌지도자회 중앙단위행사 참석 (1회 0.1백만) 	100%
'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H교육행사(3.19백만, 200명) ○ 4H지도자 연찬(2백만, 2회) ○ 4H 장학금 지급(1백만, 10명) ○ 영농4H과제활동지원(1.5백만, 1명) ○ 농업경영인육성지원(5.4백만 1개회) ○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리더십 교육 (5.6백만, 42명) ○ 읍면 농촌지도자회 육성 (5.4백만, 9읍면) ○ 농촌지도자회 총회(1.5백만) ○ 농촌지도자회 중앙단위행사 참석 (1회 0.4백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H교육행사(3.19백만, 247명) ○ 4H지도자 연찬(1.04백만, 2회) ○ 4H 장학금 지급(1백만, 10명) ○ 영농4H과제활동지원(1.5백만, 1명) ○ 농업경영인육성지원(5.25백만 1개회) ○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리더십 교육 (5.6백만, 42명) ○ 읍면 농촌지도자회 육성 (5.4백만, 9읍면) ○ 농촌지도자회 총회(1.5백만)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 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농업인 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새로운 영농기술 확대 보급 및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코자함	○ 4H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행사 지원 ○ 학교 4H회 육성을 위한 과제 활동 지원 ○ 농촌지도자 연찬 및 과제 교육 ○ 여성농업인 생활기술습득 과제교육 ○ 농업경영인회 육성 지원	기금의 이자수익금을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어, 현재 금리가 매우 낮은 관계로 저비용 사업으로 농업인단체 교육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회원 자질 향상 및 회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농업인단체 육성기금은 이자수입금을 활용 달성군 농업인 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영농기술 연찬, 장학금지원, 소득작목교육 지원, 생활개선과제 교육, 청소년들의 농심함양 및 전통문화 체험, 영농 4-H회원 영농정착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코자 조성되었으며,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어, 현재 금리가 매우 낮은 관계로 과제교육 등에 저비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 당 없 음	
	'14년	해 당 없 음	
	'15년	해 당 없 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업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농업인조직육성사업	20.8	신축성 집행	상 중 하
합 계	20.8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분	사업명	금액	비고
해당 기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 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조달방법
 - 군출연금 : 846,000천원 (1992년부터 출연)
 - 이자수입 등 자체 적립금 : 165,000천원
 -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 출연금은 농업인 조직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적절한 재원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1,035	100 %	1,037	100 %	1,036	10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07	97.3	1,010	97.4	1,014	97.9
	예수금						
	이자수입	28	2.7	27	2.6	22	2.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035	100 %	1,037	100 %	1,036	100 %
	비용자성사업비	25	2.4	23	2.2	25	2.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10	97.6	1,014	97.8	1,011	97.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하고 있으나 당분간 저금리가 지속되고 출연금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매년 사업 규모의 변동이 발생하여 다소 불안정한 운영 및 재정적 한계가 있음
- 지속적인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인한 실질적 기금 운용의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 등에 비추어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여 농업인 자질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 추진은 일반회계로 통합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